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안내서

학부모에게 띄우는 메시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1)

더퍼린-필 카톨릭 지역교육청(Dufferin-Peel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의 사명은 가정 및 교회와 협력하여 각 개인이 현재 온전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 지적, 미적, 정서적, 사회적 및 신체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카톨릭 교육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퍼린-필 카톨릭 지역교육청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학생들과 민주적 사회의 시민들의 존엄성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저희는 학생 저마다가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Special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는 각 지역의 학교 공동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포용성과 접근성을 촉진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더퍼린-필 카톨릭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는 특수학생으로 식별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모든 이가 부름을 받는’ (이사야 43:1)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내 해당 학교는 더퍼린-필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와 학생 개개인에 해당되는 특정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온타리오 주 교육법(Ontario Education Act)에 의거한 예외적 학생의 식별 및 배치에 있어서의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육청의 권리와 의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특수학생의 식별 및 배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퍼린-필 카톨릭 지역교육청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교육청 웹사이트 www.dpcdsb.org에서 특수교육 보고서(Special Education Report)를 읽어보십시오.

주의: 본 안내서를 사용할 때, ‘학부모’ 에는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생이란 어떤 학생을 말하나?

‘특수’ 학생이란 특수한 필요가 있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요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가 정한 여러 가지 ‘특수성의 범주 및 정의(Categories and Definitions of Exceptionalities)’가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 www.dpcdsb.or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쇄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란 지속적 평가의 결과에 입각하고 있으며, 특수학생의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한 교육 서비스 및 특정 목표의 개요가 포함된 계획(개별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이라고 함)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접적인 자원 및 퇴실 지원이 제공되는 정규 학급 또는 특수교육 학급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수학생은 교육청 및 학군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나?

교육법 상에 정의된 특수교육 서비스는 지원 인력 및 장비 등,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자원을 말합니다.

교육청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에는 심리학, 사회복지 및 언어병리학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지원 서비스에는 특수교육자원교사(Special Education Resource Teacher), 학습자원교사(Academic Resource Teacher), 교육자원지원사(Educational Resource Worker), 아동청소년복지사(Child and Youth Worker)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위의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인력 전원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행동학적 필요, 신체적/의학적 필요 등이 있는 학생 및 전환 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특수교육자원교사(Itinerant Special Education Resource Teacher)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특수성 여부를 누가 결정하나?

특정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은 교육청에서 임명한 ‘식별, 배치 및 심사 위원회 (Identification, Placement and Review Committee)’에 의해 내려집니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IPRC’라고 불립니다.

IPRC란 무엇인가?

교육법 규칙(Regulation) 181/98에는 모든 교육청은 IPRC를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PRC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반드시 학교장 또는 교육청 감독관이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들에는 자문 심리학자, 자문 정신과 의사, 부교장 또는 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PRC는 식별, 배치 및 심사를 합니다:

- I** 귀 자녀가 특수학생으로 식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교육부가 정한 ‘특수성의 범주 및 정의’에 따라 귀 자녀의 특수성의 분야를 식별합니다.
- P** 귀 자녀에게 적절한 배치를 결정합니다.
- R** 매학년도에 한 번 이상 식별 및 배치를 재심사합니다.

학생이 IPRC에 의뢰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나?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특수한 필요를 식별한 다음,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규 학급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자신의 능력 및 학년에 적합한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특수교육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보다 확실한 수용 및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교육계획(IEP)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교육계획(IEP)이란 무엇인가?

IEP는 특정 학생의 강점 및 필요, 그리고 해당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기술된 계획서입니다. IEP는 학부모, 교사 및 기타 관계자가 협력하여 개별적인 학습적 필요를 확인하고 이 필요에 적합한 구체적 계획 및 조정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IEP에 기재되는 내용:

- 특정적인 교육적 기대치
- 제공될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요
- 해당 학생의 학습 진전에 대한 검토 방법
- 만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영재성을 근거로 특수학생으로 식별된 학생은 제외) 취업, 추가적 교육, 지역사회 생활 등, 고등학교 졸업 후의 적절한 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학교장은 IEP를 개발할 때 해당 학부모 및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과 상의하고 IPRC 또는 특수교육심판위원회(Special Education Tribunal)의 권고안을 고려합니다.

규칙 181/98에는 특정 학생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청 관할의 모든 특수학생에 대한 IEP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기한 내에 IEP가 완성되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에게 IEP 사본을 발송합니다.

IPRC 회의는 어떻게 요청하나?

학교장 및 학교의 특수교육팀이 특정 학생에게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유익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학부모가 IPRC 회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IPRC에 의뢰하여 특수학생으로의 식별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특수학생으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 또는 학부모에게 IPRC 회의 소집을 통지한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학부모에게 본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안내서’와 아울러 대략적인 IPRC 회의 예정일을 명시한 통지서와 학부모 요청서 접수 확인서(학부모가 요청서를 제출했을 경우)를 보냅니다.

IPRC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부모는 토론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IPRC에 초대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학생도 IPRC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친척, 또는 여러분이 선택한 다른 사람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지원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하여 발언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 입회할 수 있습니다.

IPRC에 또 누가 참석할 수 있나?

학부모 또는 자녀의 학교장이 다른 사람의 IPRC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PRC 회의에 대해 학부모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

회의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학부모에게 회의 통지서가 발송되며 회의에 초대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의 회의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IPRC 위원장에게 접수된 해당 학생에 관한 정보의 사본이 학부모 및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에게 발송됩니다. 회의에서 제출된 구두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PRC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IPRC의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후에 내려집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적 평가
- 필요할 경우, 자격 있는 개업 의료인이 작성한 건강진단서 및 부모동의서
- 필요할 경우, 심리평가서 및 부모동의서
- 해당 학생이 만 16세 이상일 경우, 해당 학생과의 면담(가능할 경우) 및 부모동의서
- 해당 학부모와의 면담(해당 학부모가 권리를 포기할 경우는 제외)
- 해당 학부모 또는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이 제출한, 해당 학생에 관한 정보
- IPRC에 의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IPRC에 제출된 기타 정보

IPRC에서 배치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고려하나?

IPRC는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규 학급 배치가 해당 학생의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고 학부모의 선호와 일치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을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규 학급에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정규 학급 내에서의 IEP 개발도 포함됩니다.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학급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IEP가 개발됩니다.

IPRC의 결정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나?

IPRC의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됩니다:

- IPRC가 해당 학생을 특수학생으로 식별했는지의 여부
- IPRC가 해당 학생을 특수학생으로 식별했을 경우,
 - a) 교육부가 정한 ‘특수성의 범주 및 정의’에 의거한 해당 특수성의 범주 및 정의
 - b) 해당 학생의 강점 및 필요의 내용
 - c) 배치 결정
 - d)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권고안
- IPRC가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학급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그러한 결정의 이유
- IPRC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관계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 a) 해당 학생의 부모
 - b) 해당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
 - c) 학교장(해당 학생을 IPRC에 의뢰했을 경우)
 - d) 교육청장(Director of Education of the Board)

내가 IPRC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결정서를 받은 학부모는 IPRC와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학교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해당 학생이 시범학교를 그만둔 후 그 배치에 관한 결정을 위해 IPRC에 의뢰될 경우, 결정서를 받고 IPRC와 회의를 갖고자 하는 학부모는 결정서를 받을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학교장을 통해 교육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IPRC의 회의가 열린 후 되도록 속히, IPRC 위원장은 IPRC 결정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서를 위에 명시된 관계자들에게 발송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변경 사유가 명시된 수정된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IPRC와의 2차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제공되나?

해당 학생이 특수학생으로 간주되어 거주지 내 관할 학교 외의 학교에 배치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IPRC 재심사란 무엇인가?

- 매학년도마다 IPRC 재심사 회의가 열립니다.
-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의 교장은 학부모에 대한 통지서, 학부모의 요청서 또는 교육청장의 요청서를 근거로 해당 학생을 IPRC에 의뢰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IEP 또는 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a) 해당 학년도에 이미 IPRC 회의가 열렸을 경우
 - b) 학부모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의 교장에게 연례적 재심사를 포기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 학부모는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된 지 3개월 경과한 후 언제든지 IPRC 재심사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학부모의 재심사 회의 요청은 3개월에 한 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b) 학교장은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 또는 요청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대략적인 재심사 회의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재심사 IPRC는 당초에 고려했던 정보와 아울러 새로 접수된 정보를 고려합니다.
- IPRC는 배치를 재심사하고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기존의 결정이 지속되어야 할지 다른 결정이 내려져야 할지 결정합니다.
- IPRC는 다음과 같은 관계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 a) 해당 학생의 부모
 - b) 해당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
 - c) 학교장(해당 학생을 IPRC에 의뢰했을 경우)
 - d) 교육청장

학부모가 IPRC 재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학부모는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학교장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우려점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IPRC에 2차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IPRC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의 교장에게 IPRC 회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IPRC 재심사 회의가 열린 후 되도록 속히, IPRC 위원장은 재심사 회의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서를 위에 명시된 관계자들에게 발송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변경 사유가 명시된 수정된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청은 IPRC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배치를 변경합니다:

- a) 해당 학생의 부모가 배치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 b) 정해진 시한 내에 이의제기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아래 설명 참고)

IPRC 결정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예, 다음과 같은 경우 IPRC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자녀의 특수학생 식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 b) 자녀가 특수학생이 아니라는 IPRC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 c) 자녀의 특수학생으로서의 특수교육 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

식별 및 배치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 IPRC는 2차 회의에서 여러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IPRC 회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통지서는 2차 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 또는 당초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IPRC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2차 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 또는 당초의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청장에게 이의제기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통지서에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과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의 제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청에서 여러분의 이의를 청문하기 위한 특수교육 이의제기조정위원회를 수립합니다. 이의제기조정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관해 전혀 모르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1명은 학부모가 선정).
- 이의제기조정위원장이 편리한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합니다. 단, 회의 날짜는 위원장으로 선정된 날짜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부모 및 교육청이 이보다 늦은 날짜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는 제외).
- 이의제기조정위원회가 IPRC에서 검토된 자료를 받고,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회의에 초대합니다.
- 학부모와 해당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도 이의 제기 과정에 참석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의제기조정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3일 내에 권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조정위원회는:

- IPRC와 동의하고 당초의 결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거나,
- IPRC와 동의하지 않고 해당 학생의 식별 및/또는 배치에 관해 교육청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조정위원회는 학부모, 해당 학생(만 16세 이상일 경우), IPRC 위원장, 교육청장, 해당 학생이 배치된 학교의 교장 등에게 서면으로 권고안 및 그 이유를 제출합니다.

교육청은 이의제기조정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권고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교육청은 이의제기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은 교육청의 결정을 수락하거나 특수교육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심판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심판위원회 심판 신청에 관한 정보는 이의제기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학부모를 지원해줄 수 있나?

특수학생의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 교육청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 www.dpcdsb.org에서 찾아보거나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담당 교육감 (Superintendent of Special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자문위원회

모든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자문위원회(Special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 SEAC)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 교육청의 자문위원 협회 명단은 교육청 SEAC 웹사이트 www.dpcdsb.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당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당 교육청의 특수교육보고서 (Special Education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dpcdsb.org

교육부의 주정부학교 및 시범학교는 무엇인가?

온타리오 주 전역에 여러 주정부학교 및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시청각장애, 중증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중증 장애가 있는 특수학생을 위한 기숙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내 주정부학교 및 시범학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당 교육청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 www.dpcdsb.org 또는 교육부 웹사이트 <http://tinyurl.com/EDU-Prov-Dem-School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

학교

교장

전화

담임교사

전화

특수교육자원교사

전화

심리학 담당자

전화

언어병리학자

전화

사회복지사

전화

IPRC 회의 예정일

DUFFERIN-PEEL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OFFICE
Catholic Education Centre
40 Matheson Blvd. West
Mississauga, Ontario, L5R 1C5

프로그램 담당 교육감 (Superintendent of Program) (905) 890-1221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 담당 교육감 (905) 890-1221

더퍼린-필 카톨릭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웹사이트
<http://www.dpcdsb.org/CEC/Programs/Special+Education/>

특수교육자문위원회[SEAC] 위원 협회
<http://www.dpcdsb.org/CEC/Programs/Special+Education/SpecialEducationDP/SEAC/Membership.htm>

본 안내서는 온타리오 주 규칙(Ontario Regulation) 181/98을 반영한 것입니다.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 카세트 형식으로 된 안내서는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GF 155
 Rev. 2013